

제주지방법원 2022. 11. 28 선고 2021가단6773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1. C

2.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영민

변 론 종 결 2022. 10. 31.

판 결 선 고 2022. 11.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와 E 사이의 2020. 7. 17.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는 E에게 제주지방법원 등기와 2020. 7. 20. 접수 66576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별지 목록 3항 기재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와 E 사이의 2020. 7. 15.자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D은 E에게 제주지방법원 등기와 2020. 7. 20. 제66582호로 마쳐진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2. 26. E와 원금 37,900,000원,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율 연 5.5%로 정하여 여신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나. E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여신거래 약정상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E는 2019. 4.경부터 배우자인 피고 C와 별거하기 시작하였고, 2020. 4.경부터 협의이혼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라. E와 피고 C는 2020. 6. 1. 제주지방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E는 제1회 확인기일인 2020. 7. 13.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마. E는 2020. 7. 20.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2부동산에 관하여 2020. 7. 17.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E는 2020. 7. 20.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에 관하여 2020. 7. 15.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E는 2021. 1. 13. 사망하였고, 피고 C는 소외 E의 배우자, 피고 D은 E의 조카이다.

아. 피고 C는 2021. 3. 16.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가 제1 내지 11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권리의 존재

살피건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E의 피고들에 대한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미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E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여부

원고는 E의 적극재산은 6,476,356원에 불과하나 소극재산은 118,000,000원으로 E는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 위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E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인정근거들에 의하면, E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적극재산으로 증여 대상 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외에도, ① 제주시 F 전 545㎡ 중 17/327, ② 제주시 G 과수원 1626㎡ 중 137/4878, ③ 자동차(2019년식 싼타페 (차량번호 1 생략)), ④ 금전채권 합계 6,476,356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피보전채권을 비롯하여 총 11건의 채무 합계 117,976,819원인 사실이 각 인정되는 바,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할 시점에 E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가 야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